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약관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2조 【청약의 철회】
-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4조 【계약의 무효】
-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제7조 【특별계정의 운용】
- 제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 제9조 【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8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19조 【해약환급금】
-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 제21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등

제22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4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5조 【주소변경통지】

제2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7조 【대표자의 지정】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32조 【약관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3조 【분쟁의 조정】

제34조 【관할법원】

제35조 【약관의 해석】

제3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제3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8조 【준거법】

제3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
2.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 (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약관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 (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5%

를 곱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사망[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2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납입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생존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19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은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1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2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 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 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⑤ 제22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5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⑤ 생존연금과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 단체에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2조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제2보험기간

— 생존연금 (약관 제15조)
종신연금형(정액형,체증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정액형,체증형)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회 보증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동안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
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
금도 변경됩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회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
립니다.
5.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
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3년만기 무
보증 회사채수익율, 3년만기 국고채권의 수익율,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의 가중평균이율을
기준으로 회사가 3개월마다 정한 이율을 말합니
다.
7.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
로 보증기간의 10년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
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율(5%~2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
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동안에 대하여 「공시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
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계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원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향 목

분 류 향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